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4187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21.06.30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66호

★차장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			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2021. 6.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(제안요지)

1. 주요 개정사유 ... 정관개정 시 인가에 따른 후속 연계사항 반영

가. 돛경기장운영처 고척체육센터 공단 직영화에 따른 「정원 증원」 및 「팀」 신설

- 「고척체육센터」 공단 직접운영 ('21.1.) 및 정상운영 예정 ('21.7.)에 따른 세부 정원 증원 반영 : 3급 이하 +14명
 - ➡ (사무 4명) 운영(행정) (설비 4명) 기계설비 등 안전관리
 - ➡ (조무 3명) 안내업무 (시설관리 3명) 미화인력
- 시 「(고척스카이돔 고척체육센터) 서울시설공단 직영전환 계획 승인 검토」에 따른 '생활체육팀' 신설
 - ➡ 주요 업무 : 고척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

나. 도봉지하차도 등 5개 신규시설물 운영에 따른 「정원 증원」 및 「현장관리소」 신설

- 자동차전용도로 상 도봉지하차도 등 5개 신규시설물 공단 직접운영 예정 ('21.11.)에 따른 세부 정원 증원 반영 : 3급 이하 +16명
 - ➡ (설비 16명) 지하차도 및 터널 유지관리
- 시 「도봉지하차도외 4개소 운영인력 검토 보고」에 따른 '도봉지하차도관리소' 신설
 - ➡ 주요 업무 : 도봉~장암 지하차도 (5개 시설) 통합 상황관리 및 순찰점검
 - ※ '도봉지하차도관리소'의 경우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일을 달리 정함('21.11.1.자)

2. 개정내용

가. 정원 증원 (제3조 제1항의 '별표 2')

- ① 「돛경기장운영처」 정원 증원 : 3급 이하 +14명
 - ➡ (사무 4) 3급 1, 4급 1, 5급 1, 6급 1 (설비 4) 4급 1, 5급 1, 6급 2
 - ➡ (조무 3) 6급 1, 7급 1, 8급 1 (시설관리 3) 8급 3

② 「도로시설처」 정원 증원 : 3급 이하 + 16명

➡ (설비 16) 3급 1, 4급 1, 5급 4, 6급 3, 7급 4, 7급(보) 3

《 직급·직렬별 정원 변동 내역 》

[표 1] 직급별 정원 변동 내역

구 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7급(보)	8급
현 행	3,812	6	26	45	146	312	507	369	277	614	1,510
개 정	3,842	6	26	45	148	315	513	376	282	617	1,514
증 감	+30	-	-	-	+2	+3	+6	+7	+5	+3	+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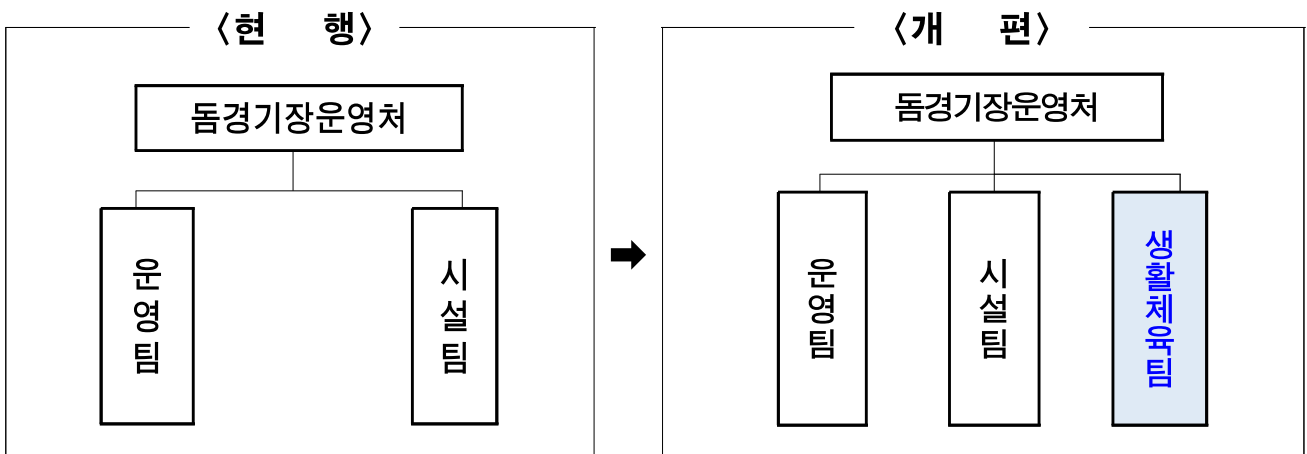
[표 2] 직렬별 정원 변동 내역

구 분	계	임원 1-2급	사 무	시 설	설 비	조 경	특 수	조 사	조 무	상 수도	사 회 복 지	시 설 관 리	자 전 거 관 리
현 행	3,812	77	525	283	660	106	32	56	287	430	762	356	238
개 정	3,842	77	529	283	680	106	32	56	290	430	762	359	238
증 감	+30	-	+4	-	+20	-	-	-	+3	-	-	+3	-

나. 팀 및 관리소 신설 (제3조 제1항의 '별표 1', 제38조 제1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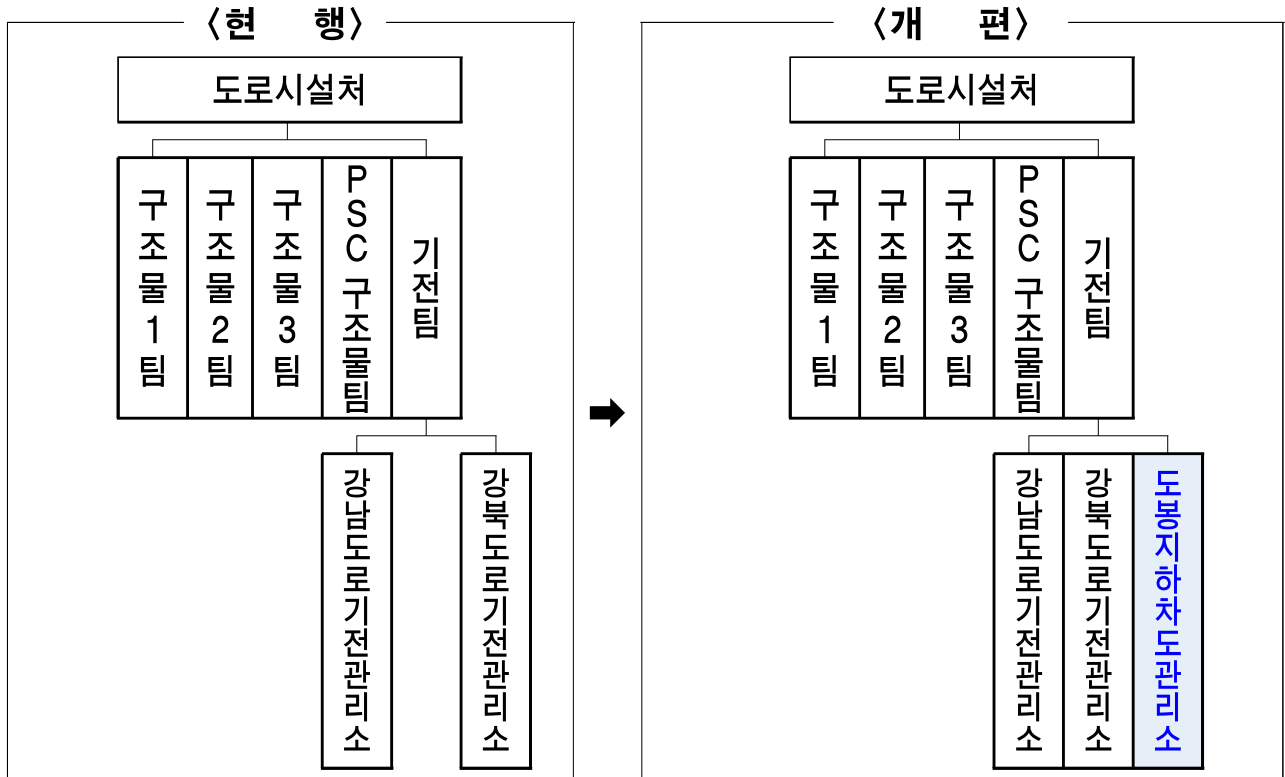
○ 돛경기장운영처 산하 '팀' 신설 : +1팀 ('생활체육팀')

➡ (현행) 1처, 2팀 → (개정) 1처, 3팀



○ 도로시설처 기전팀 산하 '현장관리소' 신설 : +1관리소 ('도봉지하차도관리소')

➡ (현행) 1처 5팀 2관리소 → (개정) 1처 5팀 3관리소

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서울시설공단 정관 변경 인가 (市 건설혁신과-7867호, '21.6.25.)
-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사회 의결 (제546회 임시이사회, '21.5.28.)
-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

나. 합 의 : 부패영향평가 의견 없음

다. 절 차 :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등, 별첨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직제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로시설치 기전팀 산하에 강남도로기전관리소, 강북도로기전관리소, 도봉지하차도관리소를 두며, 각 관리소장은 1급 내지 2급 또는 시설·설비직렬 3급 내지 4급으로 보한다.

“별표1” 및 “별표2”를 각각 별지의 “별표1” 및 “별표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“별표 1” 기구에서 “도봉지하차도관리소”의 경우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8조(도로기전관리소) ① 도로 관리처 기전팀 산하에 강남도로기전 관리소, <u>강북도로기전관리소</u>를 두며, 각 관리소장은 1급 내지 2급 또는 시설·설비직렬 3급 내지 4급으로 보한다.</p>	<p>제38조(도로기전관리소) ① <u>도로</u> <u>시설처</u> ----- ----, <u>강북도로기전관리소</u>, <u>도봉지하</u> <u>차도관리소</u>를 두며, ----- ----- -----.</p>	<p>규정 미비사항 정비 및 '도봉지하차도 관리소' 신설</p>